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그 간 우선심사 대상 확대에 일관해 온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이 매우 저조하거나 특별히 실용신안에만 적용되는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”을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우선심사의 대상)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61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</u></p> <p>4. ~ 6의3. (생략)</p> <p>7. <u>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</u></p> <p>8. · 9. (생략)</p> <p>10. <u>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</u></p> <p>11. <u>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</u></p> <p>12. · 13. (생략)</p>	<p>제5조(우선심사의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4. ~ 6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<u>국가연구개발사업</u>-----</p> <p>8. ·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12. · 13.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심사제도과	
연 락 처	042-481-8243